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31 발의연월일: 2020. 10. 15.

발 의 자:홍성국·강선우·김성주

남인순 · 민병덕 · 박재호

양기대・양정숙・이개호

인재근 · 임종성 · 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부패방지교육은 그 인지도가 국회·지방의회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 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교육 이수율 또한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 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특별교 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 임(안 제81조의2).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
	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
	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 <신 설></u>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
	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